

기관명

수 신

(경유)

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를 송부하오니 1개월 이내에 귀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				
고용 의무자	업체등명		추천대상자 중 고용해야 할 인원	
	대표자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추천 대상자 명단	보훈번호		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	
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	()
	주소	(전화번호:)		
	학력		자격·면허	
	전공		고용직종	

붙임: 1. 추천대상자 명단 1부.

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1부.

※ 유의사항

-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업체등이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(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대상자 중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.
- 붙임 2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서식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<http://job.mpva.go.kr>)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인원이 고용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

팩스번호 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